

## 관광대학원 원우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의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총원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하며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를 통하여 관광학 전반에 대한 연구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2000년 3월 입학생을 1회라 칭하고 차기 학기 입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 학기는 기수로 구분한다. 단 조리외식경영학과는 2001년 3월 입학생을 3회라 칭하고 적용한다.

#### 제4조(권리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대의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장 선거권이 있으며 기타 본 회칙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매 학기 원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학술 연구 발표
3. 본 회 및 회원과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과 외국 대학원과 교류를 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 제2장 임원

#### 제6조(임원)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원우회장)
2. 과 대표: 학과별 1인
3. 부회장 1인, 학술이사 1인, 총무이사 1인
4. 과 운영부장 : 학과별 1인
5. 자문위원장(감사) 1인 외 자문위원

#### 제7조(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선출)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원이 직접 선거한다.
2. 회장의 피선거권은 제 2학기 이상의 등록원생 중 선거공고일 현재학기 원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3. 선거권은 본회 회원에게 있으며 선출은 재적 회원 1/3이상의 투표로 성원되며 후보자 중 최고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회장은 회장 후보자가 지명하여 회장 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 등록하고, 회장후보자가 회장에 당선되면 부회장도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사 2인과 학과별 대표 및 운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단일 후보 등록 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회원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6. 투표참여 인원이 1/3미달 시 개표 전 입후보자 상호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하며, 동표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승인)

원우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선포에 따라 선출 승인된 것으로 한다.

#### 제10조(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원우회 행사를 준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하며, 제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하고 회장이 승인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며, 금전 수입 지출의 세목계산서를 작성 보관하고, 매 학기 총회 10일 전에 재무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이사는 원우회의 각종 행사 및 제반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지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언제든지 회장에게 권고,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회)

①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집행

3. 회원 총괄 및 회비 책정

4. 회칙 개정 제안

5. 기타 원우회 활동 및 자문위원과 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 제12조(고문)

①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 추대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전임 원우회장과 졸업 선배 중에서 위촉하며 원장과 행정실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 제3장 자문위원회

#### 제13조(구성)

자문위원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임명)

재적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후보자 중 최고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임무)

자문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자문
2.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 새로운 안건의 건의 및 권고
3. 원우회 및 대학원 발전을 위한 후원

#### 제4장 감사

제16조(구성)

감사는 자문위원장 1인과 자문위원 중 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1인을 임명한다.

제17조(임무)

위 재정회계 및 원우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감사 후 총회에 보고한다.

#### 제5장 총회

제18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각기 개최한다.
- ③ 임시 총회는 회장, 임원 5인 이상,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의사)

총회 의사 일정은 총회 15일 전에 회장이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결)

총회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의 확정
2. 예산 결산에 관한 보고
3. 사업 계획 보고
4. 임원 선출에 관한 보고
5. 기타 중요 사항

#### 제6장 선거관리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시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연장자나 자문 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기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토의 의결한다.

제25조(의결)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한다.

#### 제26조(후보등록)

총원우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공고 후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매년 11월 말경에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임기)

선거관리 20일 이전에 구성, 선거 종료 1일 후 자동 해체한다.

### 제7장 재정

#### 제29조(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 제30조(회계)

① 회계기간은 매 학기별로 한다.

②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에 준하며 매 임기마다 결산하여 감사를 받고 감사위원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회칙개정

#### 제31조(제안)

회칙개정안 제안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 제32조(의결)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1주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 후 1주일 이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부칙

##### 제1조

이 회칙은 2000년 3월 7일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8년 4월 2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0년 3월 2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1년 3월 2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4년 4월 1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